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내용	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	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	
		· (금융)거래 종료일* 로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(금융)	항목 신설
		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	(은행연합회 개
		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	정 개인정보보호
		니다.	준칙 중 파기가
		·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	이드 신용정보법
		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	제20조의2 반영)
		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	
	<신설>	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	
		되어 보관됩니다.	
		•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	
		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	
		습니다.	
		*(금융)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(여·수	
		신, 내·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) 및 서비스(대여금고, 보	
		호예수, 외국환거래지정,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)	
		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.	
	(중략)	(중략)	
	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	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	
	가. 본인 열람 및 정정청구권	가. 본인 열람 및 정정청구권	
	(생략)	(생략)	
	나.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	나.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	
	(생략)	(생략)	
	다.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	다.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	

(생략)	(생략)	
<신설>	라. 연락중지 청구권	항목추가
	·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	(은행연합회 개
	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	정 개인정보보호
	청구할 수 있습니다.	준칙 추가 반영)
<신설>	마.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	
	ㆍ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	항목추가
	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, 5년	(은행연합회 개
	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행에 요구할 수 있	정 개인정보보호
	습니다.	준칙 추가 반영)
	다만, 법률상 의무이행 등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	
	법률」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	
	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	
<신설>	바.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	항목추가
	·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전 당행에 개인신	(은행연합회 개
	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으로 명백한 의사를	정 개인정보보호
	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	준칙 추가 반영)